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40조의 요약

각 재화·용역별 손익귀속시기(법 제40조, 시행령 제68조)

- 일반상품 등 판매(단기할부 포함) : 재고·재화 등의 인도일(인도장소 보관일, 검사완료일, 수출품의 계약상 장소 보관일)에 귀속(인도기준) : 제1호
- 시용판매 : 상대방의 구입의사 표시일, 반송거절 시한완료일 : 제2호
- 상품 아닌 부동산 등 양도 : 대금청산기준(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및 사용수익일이 대금 청산일보다 빠르면 등기일·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 : 제3호
 - ↳ 한국은행에 대한 외화채권 양도시 외화대금은 원화로 전환하는 날
-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의 위탁자산 매매일 : 제4호
- 장기할부회수조건(2회 이상 분할, 인도일부터 최종지급일까지가 만 1년 이상)에 따른 회수·회수할 금액과 대응비용(회수기준) : 제2항
 - 단, 중소기업의 경우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으로 선택 가능함.
- 목적물 인도일, 용역제공은 제공완료일에 손익귀속(시행령 제69조제1항). 그러나 작업진행률 적용 가능
- 장기건설 : 건설·제조완료정도(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비용인식(진행기준) 그러나 진행기준 계산불능의 장부 불비시는 목적물의 인도일(완공기준)로 손익인식 : 제69조제2항
- 금융업 : 이자·보험료 등의 실제수입기준(현금주의) : 선수입이자는 제외 :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항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 매매시의 수수료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
- 금융수익 : 지급받은 날, 상환일, 원본전입일, 연장일, 인출일, 만기일, 해약일 등 :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귀속
- 신탁재산 :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계약 등으로 임대료 지급일, 지급받은 날(경과기간 결산반영시 반영대료) : 시행령 제71조제1항
 - 1년 이상 장기임대시 당해 사업연도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익금 및 손금산입
- 기부금 : 현금주의
- 외화자산 부채평가손익 : 당기손익원칙. 98년까지 발생 계상분은 기존대로 안분상각 및 환입

●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I.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손금·익금귀속시기

1. 본 조의 개요

법인의 수익과 비용은 계속적으로 창출되고 발생하는 반면, 법인세는 법인의 1년 단위 각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기간구분(cut-off)하여 과세하므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어느 기간의 익금과 손금으로 귀속시켜야 할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기업회계기준은 보수주의 개념에 따라 수익은 실현주의를,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거 인식하는데 이는 적정 경영성과의 중립적 보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법은 명확한 근거에 의거 과세하여야 하므로 손익 모두에 대해 권리와 의무의 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한다. 즉, 익금은 법인의 수익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금은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을 때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법 제43조는 법인이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한 경우는 세무상 규정과 달라도 법인이 선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회계처리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거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는 일반원칙에 의거 이러한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 상품·제품·기타 생산품 등의 재고자산 판매손익은 상품 등의 인도기준에 따라 인도일의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인도기준으로 인식하더라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을 선택할 수 있다.

- ◎ 상품 등 시용판매 : 상대방의 구입의사 표시일(반송, 거절의사표시의 최종기한 만료일)
- ◎ 상품 등 재고자산 이외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면서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면 예외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한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중인 외화증권 등을 양도하고 받은 외화대금의 환율변동분은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에 손익인식함.
- ◎ 위탁매매는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로 한다.
- ◎ 장기할부판매는 할부금회수기준에 의한다.
- ◎ 건설·제조·기타 용역 등 : 목적물 인도일, 제공완료일에 귀속됨.
- ◎ 1년 이상 장기도급공사는 작업진행률 기준에 의해 손익을 인식한다. 이 경우의 각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입금액은 '도급금액×작업진행률'로 계산되는데 작업진행률은 당해 연도에 소요된 총 공사비를 도급계약에 대한 총공사 예정비로 나누어 계산된다.
- ◎ 자산임대손익은 임대계약에 따라 임대료 지급약정일 또는 지급받은 날
- ◎ 금융이자 수입·할인액 : 권리일·이체일 등의 수입시기(이밖에 금융업의 수입금액은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예외로서 현금주의에 의하나, 선수수입은 제외하고 미수이자 는 법인이 계상한 바에 따라서 손익을 인식한다)

2. 손익 귀속사업연도 확정 중요성

① 과세소득금액계산의 결정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계산은 법인의 사업연도라는 기간계산의 독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세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결정을 위해 손금과 익금이 어느 기간에 확정되었는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법인은 계속 존속한다는 계속기업의 공준하에서 1년 단위로 기간구분하는 것이므로 손익 귀속시기 결정은 중요하다. 특히 각 연도에 따라 법인의 손익의 크기가 달라지며, 법인세율, 감면 여부, 국세부과제척기간, 소멸시효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명확한 수익 비용 대응이 되어야 한다. 기업회계상으로도 명확한 경영성적의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표와 경영진의 실적평가 등이 중요하므로 명확한 기간손익 구분(cut-off)이 강조되고 있다. 본 조는 법인세법상 소득금액 조기확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원칙문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으로 세부적인 예시를 규정하고 있다.

② 세법상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규정

기업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생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수익에 대해서는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에서 각 거래유형별로 손익귀속 사업연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II. 손익 귀속사업연도 확정기 기본원리

(법 제40조제1항)

1. 확정된 사업연도예의 귀속

① 발생주의와 권리의무확정주의

기업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익만은 재무회계상의 보수적 관점에 따른 실현주의에 의하는 것이 기업회계상의 손익인식 방법이다. 반면에 세무회계상으로는 익금과 손금의 확정된 날이라는 개념에 근거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바, 이는 기업회계상의 실현주의와 발생주의를 근거로 여기에 세법적 수정을 가한 것이다. 즉, 경제적 판단보다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정하는 법적인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권리의무확정의 개념에서 권리확정이란 권리실현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데 구체적 표현으로는 특정한 채권이 성립하여 구체적으로 채무이행의 청구가능 사실이 발생하고 채권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확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의무확정이란 권리확정의 주체 및 객체를 바꾸어 놓고 보면 된다.

②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전반적 적용

본 조 제1항에서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에 귀속된다라는 개념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이고, 제2항에 의한 시행령 제68조는 구체적인 거래유형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예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 제68조의 예시규정 이외의 거래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본항에서 규정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간손익계산의 일반원칙 및 구체적 기준에 따라 계산된 일정 기간의 소득인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거래유형에 따라 어떤 기준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각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것인가의 결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손익의 귀속시기를 법인의 임의적 세무회계처리에 의존한다면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과 이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조작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조세회피가 가능해져 과세의 형평이 깨지므로 형평과세 등을 위해 본 조가 손익귀속시기의 권리확정주의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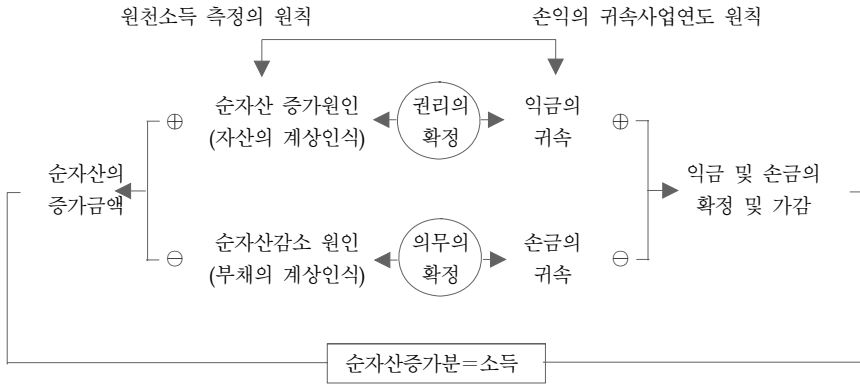
2. 세무회계상의 손익 인식기준

1) 권리의무확정주의

본 항의 표현상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라는 개념의 '확정'이란 수익에 대한 권리의 확정이 익금이고 비용에 대한 의무의 확정이 손금이라는 개념인데 이는 법적 표현으로서 권리의무확정주의라 한다. 기업회계상 실현주의·발생주의와 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서로 대응 보완되지만 기본적인 관점 차이로 인해 세법과 기업회계상의 손익귀속시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세법의 목적은 법률적 관점에서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사실로서 손익의 귀속시기

를 판정한다는 법적 기준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이밖에 조세공평의 원칙상 제반 조세법률관계에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획일적 기준의 필요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이의 관계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손금과 의무확정주의

손금 측면에서의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의무확정주의를 말한다. 왜냐하면 손금은 외부로 지출 혹은 유출되는 재화·용역이므로 법인 외부에 대한 지급의무·부담의무 등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일반적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경우도 법인의 내부 임의계산이지만 결국 지급의무로 확정될 금액을 말한다.

특별히 정한 충당금, 준비금 및 감가상각비 이외에는 앞서서의 일반 기준에 의거 채무성립과 금액확정이라는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손금으로 확정된다.

3) 익금과 권리확정주의

① 권리확정의 개념

익금 측면에서는 법인이 외부로부터 특정 수익이나 수입 및 이익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에 인식한다. 외부로부터 받는 이익이 확정되려면 상대방이 지급할 의사가 있으며 이의가 없어야 하며, 계산목적으로 볼 때 이익이나 채권 금액이 구체적으로 측정계산되고 상호 합의된 금액이어야 한다.

4) 권리의무약정주의의 예외

본 조 제1항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권리 및 의무의 확정이라는 원칙적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68조는 각 거래유형별로 예시하면서 원칙의 일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시행령 규정은 제1항에 대해 특수한 거래유형을 보다 자세히 규정하여 세법적인 개념에 의거 손익귀속시기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밖에 본 법 제43조는 손익귀속시기 등에 대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 등을 적용하여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면 권리의무확정원칙에도 불구하고 매기 계속 적용되는 공정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적용하는 기업회계를 대폭 반영한 것이다.

3. 재무외계상 손익 인식기준

1) 발생주의 외계개념

① 발생주의

발생주의의 기간손익 인식기준은 현금출납에 두지 않고, 기간손익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당기에 배분될 수 있는 손익의 발생사실에 두어 이를 인식하고 기간손익을 계산하는 것인데 모든 수익과 비용을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현금주의가 있는데, 복잡한 경제환경에서 현금의 수입과 지출은 많은 수익 창출과 비용발생 단계의 특정순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업회계는 명백한 수익과 비용의 발생사실을 더 존중하는 것이다.

② 발생주의 적용시의 측정개념

그러나 손익의 발생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 인식하여야 할 것인가는 측정키 어려우나, 미지급비용의 경우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 미지급되어 소멸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발생주의에 의해 당기손금으로 계상하고 후일 채무소멸시 수익으로 해야 할 것이다.

미수수익이 있는 경우 발생주의에 의해서 무조건 당기수익으로 계상할 것인가, 기업회계상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해 손금처리하는 것은 크게 불합리한 점

은 아니겠으나 미수수익을 이익으로 계상했다가 실제 수입을 얻지 못한다면 기업의 안전과 보수주의원칙에 의해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익에 대하여는 회계학상의 보수주의 개념에 의거 어느 정도 확정된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계상하는바, 이것이 실현주의 개념이다.

2) 실현주의에 의한 수익인식

① 수익의 실현주의 개념과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에서 수익은 수입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 인식하고, 수익과 관련된 비용은 실현된 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실16.5 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 인식한다. 이는 수익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로서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추정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신뢰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실16.7 수익과 관련 비용은 대응하여 인식한다. 즉,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일한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이후 예상되는 품질보증비나 기타 비용은 수익인식시점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재화 판매의 대가로 이미 받은 금액은 부채로 인식한다.

여기서 실현이란 일반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활동을 완료하는 것과 이로 인한 대가와 수익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수익의 인식 및 수익의 발생시점에 대해서 판매활동의 경우를 예로 들면, i) 고객으로부터의 주문, ii) 상품의 발송·인도, iii) 매출채권의 성립, iv) 대금지급청구, v) 대금의 회수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i)과 ii)가 위의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점이 된다.

기업회계에서 수익인식을 실현주의로 하는 이유는 발생주의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게 되면 미실현이익까지 수익으로 계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생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수익에 대하여만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미실현이익은 가능한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② 수익실현주의의 유형

중요한 경제적 활동이 완료된 것은 업무의 성격이나 유형 및 수익발생과정의 차이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업종에 따라 수익실현 양태가 차이가 있는데 상품 등 재고재화는 주로 인도기준, 용역의 경우 진행기준, 보장계약·도급·납품의 경우 생산기준, 금융기관이나 일반소비자 직접 거래의 경우 현금 회수기준, 성장품목은 자연증가 기준 등을 적용한다.

③ 기업회계기준상의 인도기준

기업회계기준은 수익인식에 대한 실현주의를 기준으로 하면서 매출항목에 대한 실현의 개념을, 상품·제품 등은 인도시점에, 용역매출은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화·용역의 인도기준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면서 거래유형별로 약간씩 차이를 두고 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16.10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2)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 (3)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4)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6.11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 (1)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 (3)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4)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원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인식과 계상

기업회계상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비용의 경우 법인이 외부로 지출하여야 할 금액인바, 보수적 견지에서 재무손익의 건실화를 위해 어느 정도 측정 가능하면 비용·원가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 발생주의란 현금수입과 지출에 관계없이 수익창출과 관련된 가치의 소비 및 희생이 있는 경우 및 경제적 급부의 소비가 발생하면 비용을 인식한다는 개념이다.

4) 기간 수익비용대응원칙

① 수익비용대응 개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실무의견 문단 16.7은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인의 주요 수익 창출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원가는 성격적으로나 기간적으로 직접 대응표시가 가장 쉬운 항목이다. 그러나 비용은 수익창출이 없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으며 기간별이나 원인결과 직접 대응면에서 비껴가기도 한다.

건설업의 경우를 예로 들면 건설공사의 수주를 위해 입찰을 하는데 많은 회사들의 입찰비용의 손금인정에 있어서 공사낙찰에 성공한 경우뿐 아니라 실패한 경우도 관련 비용은 모두 손비에 계상하여 세무상 손금으로 인식한다.

이밖에 비정상적 지출이나 손해배상비용도 비용으로 인식 계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발적 혹은 일시적 경비도 전체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필연적 행위의 일부로 보기 때문이다.

② 전반적 및 일반적 대응성

기업의 수익창출에는 대부분 관련비용이 수반되므로 기업거래 및 조직구조가 복잡해지고 수익발생 종류나 유형이 복합적일수록 외관상의 직접 대응현상의 관찰은 어려워진다. 그러나 수익과 비용은 여러 차원에서 직·간접적인 대응성을 갖고 있는데 간접 관련되는 손금, 직접 대응되는 손금, 전반적·포괄적 관련손금 등의 여러 유형이 있다.

③ 개별적·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제품제조원가

기업회계상 매출원가 및 제조원가 등으로 표현되는 직접 대응원가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요소를 직접 소비한 것을 뜻한다. 이들의 구체적 대응성은 법인의 주요 사업행위이므로 매출수익에 더욱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대부분 기간별 비례 혹은 준비례 정도로 대응된다.

④ 기간적·간접적으로 대응되는 기간원가

기간원가는 기업회계상 판매비와 관리비로 표현된다. 기간원가는 수익추구에 소요되는 원가가 특정유형의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못하는 경우의 원가를 말한다. 이는 늘상 발생하는 매년별 회계기간원가인데 발생한 사업연도 및 기간에 비용화 되면서 손금 인정된다.

4.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유형별 결쟁기준 요약

1) 발생주의의 수용 및 권리·의무확정과 의 조쟁

세무상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반드시 권리의무확정주의만을 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고 있지 않다. 즉,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기본원리로 삼으면서 기타 개별적 손익은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고 있고 이밖의 일부 손금에 대하여는 발생주의를 수용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정하고 있다. 특히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손금확정인 의무 및 채무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하는데 외부적 지출의 경우라면 확정된 채무에 한한다. 즉, 판매비와 관리비와 같이 기간대응적 비용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무가 확정되면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만 채무확정의 요건을 전부 갖춘 지출액 중에서 당해 사업연도 기간에 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출한 때에 일단 자산이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다가 서서히 점차 비용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있다.

① 자산·자본적 지출 계상후 향후 기간별 비용 배분인식

채무확정 후 자산으로 인식되고 원가배분방식에 의거 기간비용으로 인식하여 비용화 과정을 거치는 경우까지도 채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세법상 손금을 계상한다면 자산취득 시점에서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채무확정금액을 일단 자산으로 인식한 후 일정한 비용화 절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가계산절차에 따른 제조원가 및 매출원가나 감가상각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밖에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발생주의방식에 의해서만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과 같이 아직 지출은 아니지만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있는데 이러한 비용의 손금산입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조세부담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계산에 모순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특정한 성격의 충당금에 대하여 예외적이면서 제한적으로 손금을 인정하고 있다.

② 권리의무확정과 발생주의 모두 적용

기업회계상의 발생주의를 상당히 수용하고 있는바,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면서 권리의무의 확정기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존중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채무의 확정개념과 관련하여 기간비용으로 당기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i) 과거의 지출 및 채무확정액 중 원가배분 방식으로 비용으로 되는 것, ii) 당기인 현재의 지출 및 채무확정으로 기간대응 지출경비인 것, iii) 장래의 예상지출로서 충당금 및 준비금의 방식으로 비용으로 되는 것 등의 세 가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산입금액이 된다.

2) 거래유형별 기업외계와 세무외계 손익귀속시점 비교

세무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나 기업회계상의 수익의 실현주의, 비용의 발생주의는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각 사업연도별로 기간구분 일별하면 거래 유형별로 차이가 있고, 특히 2개 사업연도에 걸친 거래인 경우는 세무조정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본 항 이외에 기타 항이나 일반적인 경우까지 그 차이를 개괄하여 비교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법인세법은 제40조).

▣ 손익귀속시기·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차이 ▣

판매유형·비교점	법인세무회계 (본 조 제40조, 시행령 제68조)	일반기업회계기준(제16장)
1. 일반재고재화(상품·제품·생산품 등)의 일반매출	재고재화 등의 인도일(인도장소 보관일, 검사완료일, 수출품의 계약상 장소 보관일)에 귀속(인도기준) : 제1호	재화소유의 효익과 위험이 이전되고 수익금액의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경우
2. 부동산 등 자산(상품 이외 재고재화·고정자산 등 모두)	대금청산기준(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및 사용수익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르면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 : 제3호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그러나 법적명칭 변경전이라도 실질적 사용수익이전일에 인식 가능)
3. 시용판매	상대방의 구입의사표시일, 반송거절 시한만료일(제2호)	매입자의 매입의사표시일
4. 위탁매출	수탁자의 위탁자산 매매일 : 제4호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일
5. 장기할부조건자산(재고·부동산 등) 양도판매	할부회수조건(2회 이상, 1년 이상)에 따른 회수·회수할 금액과 대응비용(회수기준) : 제2항	할부판매·용역제공도 원칙적으로는 인도기준임. 이자부분을 제외한 현재가치판매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반영하고 이자상당액을 기간경과에 따라 안분수익반영함. 비상장중소기업은 회수기일도래 기준 적용 가능
6. 일반적 건설·제조·용역제공 등	목적물 인도일, 용역제공은 제공완료일에 손익귀속(시행령 제69조제1항). 그러나 작업진행률 적용 가능	진행기준에 따른 손익인식, 진행률 등의 합리적 측정가능 및 회수불투명→원가범위내 회수액을 수익계상, 비상

		장중소기업은 완성기준 적용 가능
7. 장기도급계약의 건설공사·장기도급 계약제조 및 용역 (1년 이상)	건설·제조완료정도(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비용인식(진행기준) : 영 제69조제1항 본문 그러나 진행기준 계산불능 등 장부불비시는 목적물의 인도일(완공기준)로 손익인식(제69조제2항)	장기용역·건설 등은 진행기준이 원칙 진행률 추정 불가 혹은 회수가능성 약하면 : 회수가능액만 수익, 발생원가는 비용인식(실제회수기준)
8. 금융·보험영위법인의 영업수입(수입이자·보험료 등)	이자·보험료 등의 실제수입기준(현금주의) : 선수입이자는 제외 :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항	발생주의원칙
9. 일반법인의 수입이자	지급받은 날·상환일·원본전입일·연장일·인출일·만기일·해약일 등 :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귀속	발생주의(기간귀속 이자계산 : 기간경과분 이자상당액의 사업연도수익 : 익금계산 가능)
10. 자산의 임대료 등 임대수입	계약 등으로 임대료지급일, 지급받은 날(경과기간 결산반영시 반영대로) : 시행령 제71조제1항	인도일, 즉 용역의 제공일(임대기간별 귀속·안분)
11. 기부금	현금주의	발생주의
12.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당기손익원칙. 98년까지 발생분은 기존대로 안분상각 및 환입	당기손익원칙. 과거발생분은 99년부터 이월잉여금에 가감함.
13. 사채할인발행차금	기업회계대로 손금 반영	유효이자율법으로 지급이자 반영

III. 손익귀속의 세법상 권리의무확정기준 (법 제40조제2항)

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의 포괄적 위임

기업거래 유형이 달라지고 법인의 거래상황이 다양화되고 계속적으로 변모되는데, 이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 제1항에 익금과 손금의 권

리의무확정주의를 규정하면서,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 등 거래유형에 따라 손익귀속시기를 규정하였다. 또한 시행규칙에 인도일·작업진행률 계산방법 등이 위임규정되어 있다.

② 각 거래유형별 손익귀속사업연도 요약

◎ 자산판매손익 등(시행령 제68조)

상품 등 : 인도일, 상품 등의 시용판매 : 구입의사표시일, 반송·거절의사표시만료일, 상품외 자산양도 :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의 매매일, 장기할부조건 : 회수약정기준일

◎ 용역제공손익 등(시행령 제69조)

건설·제조·기타용역 등 : 목적물 인도일, 용역제공 : 제공완료일, 1년 이상 장기건설계약 등 :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비용을 손익귀속반영함.

◎ 금융이자소득 등의 귀속손익(시행령 제70조)

○ 일반법인의 이자수입 : 권리확정일(인출·만기·상환·해약일 등 객관적으로 수익인식원인행위가 파악되는 날), 결산에서 미수수익을 이미 반영하면 익금입.

○ 금융·보험영위법인의 수입이자 : 현금수취일(선수입이자는 반영했어도 익금산입 아님). 결산시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는 익금반영함.

○ 일반법인의 수입이자와 지급이자 : 발생주의로 이자수입인식, 지급이자 비용계상 반영가능

○ 배당소득의 경우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시점에 귀속. 다만, 금융회사 등이 신용불량자를 위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 매매하는 경우 수수료 :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신탁재산 :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임대료 등의 귀속연도(시행령 제71조) : 계약상 임대료 지급약정일, 약정없으면 실제 지급받은 날, 소매업의 금전등록기 설치시 현금주의 적용

○1년 이상 장기임대계약 : 사업연도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관련 비용은 당연도 익금 및 손금산입함.

1. 자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법령

●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 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 재고자산 등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

(1) 재고자산 인도로 인한 손익확정

① 인도기준으로 수익인식 단일화

본 항은 상품(부동산 제외)·제품 및 기타 생산품 등의 재고재화의 판매손익 귀속시기에 대하여 그 상품·제품·생산품을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상으로도 상품·제품 등의 수익인식시기와 관련하여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에 실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를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때라고 보는 것이다. 즉,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모두

인도시점을 재고상품 등의 손익귀속시기로 하고 있다.

종전에는 상품 등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선수금을 받고 인도할 수 있는 상태로 재화를 자체 창고 등에 보유한 경우도 익금으로 보는 인도가능상태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인도한 것만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인도기준으로 단일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인도라는 의미에서 재화 등의 장소적 이전은 중요하지만 거래처로부터 재화대금을 이미 수취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재고수량을 이미 갖고 있다면 재화는 인도했으나 아직 대금을 수취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상태보다도 수익의 확보라는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강한 것으로 보아 권리의무확정 차원에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익금으로 산입하였었다.

왜냐하면 모든 판매조건은 성취되었고 단지 상대방에게 배달하여 제공하는 개념만 필요한데 교통 및 운송수단 발달로 이런 문제는 너무 쉬운 상태라고 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반대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었고 반품도 용이할 뿐 아니라 완전하고도 실질적인 인도가 보다 중요해졌으므로 인도가능상태 기준은 폐지된 것이다.

(2) 인도기준과 인도일의 개념

인도란 자기 소유하면서 보관하던 재화 등이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건네졌다는 뜻이다. 민법상으로는 동산의 물권이 변동되었다는 뜻인데 자신의 점유 상태에서 상대방의 점유 보관상태로 이관되었다는 뜻이다. 인도의 유형으로는 현실적인 실질 인도외에도 차용물건의 귀속, 점유 상태의 변경 등이 있다.

① 실질적인 인도

재화 등의 인도과정은 대부분 창고로부터의 출고, 운송수단에의 적재 운반, 상대방지역 도착 및 검수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간에도 물량이 많거나 먼 거리인 경우는 여러 날이 경과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순간을 인도로 볼 것인가가 문제인데, 사회통념상으로는 물건이 양도인의 영역을 벗어나 양수인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인정되는 때가 인도시기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한 날, 검사완료일 및 수출물품의 계약상 인도장소 보관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❶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⑦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수출거래의 인도일

국내거래는 도착일·검수완료일 및 관행상의 지정 인도일이면 된다. 수출거래의 경우는 아무리 국제화에 따라 신속한 운반이 가능하다 하여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상기 시행규칙은 물품 수출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CIF 조건이라면 상대방 나라에 도착하여야 하고, FOB 조건이라면 우리나라의 항구에 도착되어 선적대기중이면 인도일이 된다.

③ 수입거래의 인도일

수출뿐 아니라 외국법인이 국내에 외국물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도 계약금이나 선수금 등의 영수일에 관계없이 조건상 외국항구에서의 선적일 등을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일반적으로는 선적조건에 따른 선적일을 수익의 실현시기로 한다.

(3) 인도기준에 대한 기타사항

① 미확정차액의 정산

쌍방간의 계약에 따라 재화 등을 인도함에 있어서 조건이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즉, 잠정가액을 정하고 난후에 실제 정산방식으로 차액을 정산한다면, 인도시점에는 잠정가액대로 손익을 인식하나 당해 정산차액은 인도시점에 관계없이 당해 정산가액이 확정된 때의 손익으로 한다. 즉, 향후 정산차액을 당초의 판매 및 인도시점으로 소급하지는 않는다.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 개념에 의거 채권의 금액이 확정적으로 계산되는 시점에 소득을 귀속시킴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②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회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조기 거래징수를 위해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을 중간지급조건부로 판매하면서 대가의 일부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상의 인도는 실질적인 인도일이라는 별도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아니고 구체적 인도일에 매출액으로 익금산입한다.

(4) 인도기준이 적용되는 재고자산의 개념과 범위

① 일반 유통성 재고자산

본 항은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손익귀속시기는 인도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3호는 상품 등 외의 자산, 즉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부동산 등은 대금청산일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 아닌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손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된다는 것이다.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은 일상적인 의미로서의 거래당사자간에 주고 받음으로써 유통되는 재고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 제조업의 재고자산인 제품항목 및 판매업의 재고자산인 상품 계정항목 등이 재고자산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제품·상품 등의 계정이라도 부동산은 제외한다. 즉, 부동산은 인도기준이 아니고 제3호의 별도기준(대금청산일)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② 부동산 등의 재고자산은 제외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

축하여 판매하는 신축판매업자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즉 선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 관행의 계속 적용시는 잔금일·등기일이 아닌 날로 할 수도 있다. 부동산 등은 설사 재고자산 부류에 속하거나 재고자산계정이라도 본 항에서 규정하는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2) 상품 등 재고자산 시용판매의 손익귀속연도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① 상대방의 상품 등 구입의사 표시일

시용판매는 구입희망자가 먼저 상품 등을 사용하여 본 후 만족하면 사겠다는 뜻을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어 판매가 성립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시용판매는 판매자의 구입희망자에 대한 인도기준이 아니라 판매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날, 즉 구입의사표시일에 판매손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무한정 상대방의 구입의사 표시일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기간내에 특별한 거절·반품의사가 통지되지 않으면 판매로 확정할 수도 있다.

② 반품·거절의사표시 일정기간 경과시 판매손익인식

상품을 인도한 후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상품 등 구입에 대한 거절의사가 분명히 표시되어야 하며, 일정기간내에 반송되거나 거절의사가 표시되지 않으면 판매로 본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러한 행위(상품 등의 반환, 거절의사의 구두·문서접수 및 이에 따른 상품 등의 반송)의 기간만료일까지 행위가 없으면 판매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반송되지 않거나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판매손익을 인식하였다면, 이는 나중에 손익귀속내용을 수정회계처리할 대상이 된다.

3) 상품 등이 아닌 자산(부동산 등)의 양도손익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① 인도기준과 대금청산기준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 등의 일반 재고자산은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인도로 채권·채무가 확정되고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판매 또는 양도로 인정되는데 별 문제는 없다.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는 인도기준 적용되는 상품 등에서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신 제3호는 “상품 등외의 자산”은 대금청산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의 양도는 매매계약체결부터 명도나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쌍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도에 해약하는 등의 사례도 많다. 본 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할 때에 손익을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완전히 대가를 받아 봐야 손익인식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상품·제품 등 동산·재고자산 등이 아닌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 및 사용수익하는 경우 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손익이 귀속된다.

(1)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① 고정자산 및 투자·기타자산

본 호의 규정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상품 등외의 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제1호에서 규정하여 해설한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 등의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만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고정자산계정, 즉 투자자산, 유형자산계정, 무형자산계정 등이 포함된다.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의 일종이면 인도기준이 되고 법인의 투자자산·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면 본 호의 적용을 받아 대금청산기준이 된다.

② 자산의 양도

자산의 양도란 판매·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의거 유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국가 등에 수용되거나 강제로 철거되어 손실보상금 등을 받고 자산이 소멸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그러나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지만,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양도담보한 목적이 채무변제에 충당되었다면 이는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본다.

(2) 대금청산일 원칙, 실제 점유일 중 먼저일

① 대금청산일 기준

대금청산일이란 당해 부동산 계약상의 총 거래대금에서 최종 잔금까지 완전히 청산된 날을 의미한다. 대금청산이란 현금으로 확보되었다는 뜻이므로 어음으로 잔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당해 어음이 은행에서 실제 결제된 날을 말한다.

②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본 호는 일반 유동성 재고자산인 상품 등이 아닌 부동산 등의 자산은 대금청산일을 손익인식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단서규정에 의해 대금청산전에 실질적 점유 인도행위가 먼저 있는 경우는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먼저 일자를 손익 귀속시기로 하고 있다. 등기·등록자산인 부동산의 경우 거래 쌍방간의 편의에 따라 대금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실제 사용수익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여기서 사용수익일이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데,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통칙 40-68...4).

권리의무확정주의 개념에서, 대금의 청산이 완료되었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등록이 경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인도된 경우 및 상대방이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모두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행위들인 것이다.

③ 소유권이전등기 기준에 의한 손익확정

공부상에 등기되거나 등록되는 자산인 경우에는 법적 및 경제적 차원에서 등기된 날에 제반 권리·의무가 이전된다. 이는 객관적 혹은 외관적으로도 명확하다. 즉, 자산에 대한 대금청산 이전에 자산을 인도하거나 공부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권리의무확정의 정도가 보다 강하므로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최우선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도록 단서가 규정하고 있다.

등기란 일반적으로 민법상 소유권 이전의 대외적 효력발생 요건인데 이때 확정적으로 권리·의무변동이 있었다고 외관상 관찰되므로 대금청산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손익을 귀속시킨다.

(3) 부동산 신속판매업 등의 경우

부동산판매업 및 주택신속판매업자가 보유한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는 부동산판매업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부동산이라도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반재고자산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 인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당해 자산 자체가 유동성 재고자산이 아닌 부동산이란 특성이 있다. 따라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먼저 도래한 날에 인식한다. 따라서 대금완납 안되어도, 소유권변경이 안되어도 입주 및 사용일이 빠르면 입주일 및 사용한 날을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4) 기타 방법에 의한 양도

① 토지손실보상금 등은 대금확정 수취가능일

토지수용손실보상금 및 철거이전보상금은 법인의 경영의사결정에 관계없이 대부분 수동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경우 무조건 대금청산기준일을 손익귀속시기로 하는데 지급받은 날·대금 공탁일·지급확정일·정산차액조정액확정일 등을 손익귀속시기로 보면 타당하다.

② 징발재산의 매도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대금을 징발보상증권 등으로 수취하면 당해 증권이

상환계획에 의한 대가 비율만을 손익인식한다.

③ **외화채권 외화대금 환율변동분은 원화로 전환되는 날 기준**

한국은행이 취득한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에 손익으로 인식한다.

4) 위탁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68조제1항제4호)

① **수탁자의 위탁자산 매매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사례 4. 규정은 위탁매출액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위탁품을 판매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항은 위탁매매에 있어서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킨다는 뜻이다.

상품·원재료 등을 매입하는 경우의 원가확정도 역시 수탁자의 매입시점으로 한다.

(1) 위탁매매의 개념과 범위

① **위탁매매**

위탁이란 자신이 행할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맡겨서 수행하는 것이다. 위탁매매란 상품 등의 판매 및 구매를 자기계산하에 타인인 수탁매매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매매 형태이다. 위탁매매의 손익인식시기는 수탁자가 당해 자산을 매매하거나 구입완결 및 양도와 양수한 날에 귀속된다. 위탁구매도 마찬가지인데 수탁자의 매매시점, 즉 수탁자가 자산을 타인에게 인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시점이 위탁자 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가 된다.

(2) 수탁자 판매기준의 손익확정

① **수탁자 매매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사례 4. 규정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에 실현되는 위탁매매일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도 위탁자가 당해 자산을 매매·양도·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다.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위탁매매인인 위탁자가 상품 등을 판매한 날에 판매 보고를 받아 손익을 인식하면 되므로 결산 시까지 기업회계나 세무회계 모두 동일하게 인식될 것이다.

(3) 위탁판매수입금액의 세무조정

상품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위탁자가 그 상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사 례】

제품재고액 중 8,000,000원은 타인에게 위탁판매하기 위한 위탁품(적송품)으로서 02. 12. 31에 위탁자가 10,000,000원에 판매한 것임.

【세무조정】

⇒ 위탁판매액 10,000,000원은 익금산입하고, 원가 8,000,000원은 손금산입함.

5) 자산양도후 매출할인액의 지급약정일 귀속 (시행령 제68조제5항)

① 법인매출할인액의 약정상 지급기일에 차감귀속

자산 등 판매손익이 귀속된 후 판매총액 등의 실적액이나 수금실적 및 조기수금에 대해 일정매출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바, 이러한 매출할인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상 지급기일 혹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귀속시킨다. 98년까지는 매출할인액을 판매관리비계정에 포함시켰으나 99년부터는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순매출액으로 표시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2010. 12. 30 개정)

② 판매시점 수정이 아니고 매출할인시점의 현금주의 적용

매출할인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데, 이는 매출수익이라는 익금항목에 대응하여 손금항목으로 대응시키는 개념이다. 방법에 있어서는 총매출액의 익금항목, 관련 매출할인액의 손금항목이 아니고,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액을 차감하여 순매출액으로 매출액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순매출액으로의 차감표시(매출액-매출할인)는 당초 매출시점이 아니고 매출할인액이라는 혜택을 주기로 한 약정일 혹은 매출할인액의 지급기일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실제 지급한 날의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 즉, 의무확정·현금주의 개념으로 매출할인액이 차감반영된다.

6) 장기할부조건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68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

(1) 장기할부조건판매의 외수기준 손익귀속

① 손익인식방법 개요

자산의 장기할부조건판매는 본 시행령 제1항의 상품·제품 기타의 생산품 등 재고자산이나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의 일반매매와는 달리 이러한 제반 자산의 판매에 있어서 판매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판매형태이다. 장기할부조건 판매는 말그대로 장기간에 걸쳐 분할·할부로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처로부터의 대금회수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수금지연, 대손 및 계약위반의 위험성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모든 매출액에 대해서 인도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안전성 및 보수주의의 견지에서 할부금 회수기일 도래기준에 의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타당한 회계관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이런 면을 감안하여 장기할부조건기준에 적합한 자산의 판매는 인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금과 익금을 계산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010. 12. 30 신설)

② 장기할부조건의 개념과 법적성격

본 호는 장기할부조건판매의 대상으로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자산만 해당한다. 자산은 대부분 재화를 말하는데 재화가 아닌 용역의 할부판매는 본 항의 규정대상이 아니다. 또한 장기가 아니고 일반할부조건매매도 일반매매의 일종으로서 소유권과 사용권이 넘어가므로 인도기준을 적용한다. 장기할부의 경우는 대금만을 장기간에 걸쳐 받는 거래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매수인이 사용수익권을 가지면서 외관상 법적소유권만 매도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용역의 장기건설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이 별도 규정하고 있다.

(2) 세법상 장기할부조건판매의 대상과 범위

①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와 요건

장기할부조건으로서 대금회수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려면 첫째, 2회 이상의 분할대금 수취요건과 둘째, 목적물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

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대금기간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만 세법상의 장기할부조건 판매로 인식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장기할부조건외의 주요 대상**

장기할부조건판매의 대상은 일반자산은 물론 무형자산도 자산이므로 가능하며, 주식도 자산이므로 장기할부조건판매에 해당된다.

③ **2회 이상 분할한 대금지급방법 약정**

장기할부조건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대금수취 횟수는 최소한 2회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일반 계약에 의한 계약금과 잔금 등의 대금수취과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회 이상이므로 2회로 나눈 계약부터 장기할부조건인데, 일반적으로 특정계약이 장기라는 개념으로 되는 경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는 형태를 갖게 되며, 중도금은 제1차, 제2차 등 여러 차수로 분리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단기 계약은 대부분 계약금과 잔금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장기할부도 계약금과 잔금으로 최소 2회 이상,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면 해당된다.

④ **장기할부조건기간**

장기할부조건이 되려면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부불금의 최종분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 당해 목적물을 인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거나 1년을 초과하여야 장기할부조건이 된다.

⑤ 소유사용수익이전

장기할부조건계약은 일종의 양도청산계약이므로 당해 자산이 매수인에게 실제 인도되어 사용 수익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형식적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고 실제 사용수익권도 이전되지 않는다면 매매예약에 불과하므로 매매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손익 자체가 인식될 수 없다 하겠다.

(3) 장기할부조건판매 손익귀속시기

① 할부금(회수) 기준

제2항은 장기할부조건판매시의 손익의 귀속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이나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규정하여 할부금 회수기준을 명백히 하고 있다. 즉, 장기할부조건판매에 대하여는 자산인도라는 사실을 권리의무 확정으로 하지 않고 할부대금 회수를 보다 확실한 권리의 실현가능상태로 본다는 것이다. 할부매출 중 회수기간이 장기(1년 이상)이면 기간경과에 따라 이자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단기이면 인도기준으로 한다는 뜻이며, 이자아닌 판매손익은 인도기준에 따라 한꺼번에 손익을 인식한다는 뜻이다.

② 대금회수의 개념

장기할부라도 판매손익은 인도기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이자수입만 별도 구분계산해 기간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그러나 세법상 장기할부조건판매로 분류되면 대금의 회수기준에 의거 손익을 인식한다. 여기서 회수기준이란 실제 회수한 경우뿐 아니라 계약상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에 손익이 인식되는 것으로 본다. 즉, 회수기일의 도래일이나 회수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실질적 회수 약정일보다 먼저 회수한 경우는 먼저 회수한 날에 손익 인식하며, 회수 약정일보다 실제 회수가 늦으면 회수 약정일에 손익을 인식한다. 즉, 현금회수일과 회수약정일 중 먼저일에 손익인식한다.

③ 할부회수대금대응손금 계산산식

장기할부판매에서는 계약상 대금회수금액 자체가 익금인데, 익금에 대응되는 손금은 해당판매 자산의 총 원가 중 회수금액의 구성비중 만큼이다. 회수금액의 구성비중은 총 할부판매대금 중 해당기간별로 회수한 금액의 단순합계로 하는데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당해 사업연도 할부회수대금의 대응월가]

=할부판매 자산의 취득원가와 지출액

$$\times \frac{\text{각 사업연도에 실제 회수하였거나 회수약정(회수기일분) 금액의 합계액}}{\text{총 할부판매 합계금액}}$$

(4) 장기할부채권의 연재가치 평가차금의 안분환입 (시행령 제68조제6항)

① 장기할부채권명목가 ⊖ 현재가치 차액의 안분환입

장기할부조건에 대해 할부금 회수기준으로 총판매대금의 명목금액에 대해 수익(익금)과 비용(손금)을 계상인식하지만 장기할부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하여 현금가치의 매출액만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은 채권·채무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면 현재가치로 평가한다고 규정하면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환입하면서 이자수익으로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항은 이렇게 장기할부조건 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 반영한 경우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당액에 대해 기업회계에서 유효이자율법으로 분할환입액을 이자수입으로 인식하는대로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없앴다.

따라서 장기할부조건 판매에 대해 명목가치대로 기업회계상 손익 인식하면 그대로 세무 익금·손금이 정리되며, 현재가치를 적용하여 기업회계상 반영하면 그대로 익금·손금이 정리되도록 하여 회계와 세무처리를 통일화시켜 세무조정의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관련법령

❶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⑥ 법인이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장기할부조건 자산 판매의 회계·세무처리사례

○ 자산 취득·장부원가 60, 판매 현재가치 100, 장기할부판매 명목가치 120(2년)

① 명목가액대로 회계처리

• 판매 (차) 장기할부 미수금 120	(대) 할부가매출 120
• 50% 수금 (차) 현 금 60	(대) 장기할부미수금 60
(차) 할부가매출 60	(대) 매 출 60

$$\text{대응원가} : 60 \times \frac{60}{120} = 30, \text{매출이익} = 60 - 30 = 30$$

② 현재가치대로 회계처리

• 판매 (차) 장기할부 미수금 120	(대) 할부가매출 100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20
• 50% 수금 (차) 현 금 60	(대) 장기할부미수금 60
(차) 할부가매출 50	(대) 매 출 50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10	(대) 이자수입 10

$$\text{대응원가} : 60 \times \frac{50}{100} = 30, \text{매출이익} = 50 - 30 = 20, \text{이자수익} : 10 = 30$$

③ 이자상당액의 총양도액 포함

장기할부판매대상 자산에는 일반자산 원가 외에도 자산취득 관련이자나 금융비용도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금액도 자산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장기

할부매입시의 매입가액에 가산된 이자상당액은 자본적 지출로 하는데 이는 이자상당액을 매대대금의 일부로 본다 뜻이다.

④ 주식의 장기할부 취득시 할인차금의 취득원가 제외

주식을 장기할부로 매입한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다. 따라서 주식의 장기할부 구입의 취득원가는 현금가 기준으로 반영하며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장기미지급금 계정 등 부채의 감액(-)으로 계상한 후 기간경과에 따라 지급이자로 반영한다.

(5) 장기할부판매의 회계세무처리

할부대금(회수) 기준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회계처리방법은 손익계산서에 매출계상하는 방법과 대조계정을 설정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① 인도시에 매출계상하는 방법

상품 등 재고자산의 일반적인 판매시에 차변에 외상매출금, 대변에 매출로 처리하듯이 장기할부판매조건의 자산 인도의 경우도 대변에 할부매출, 차변에 할부외상매출금으로 일단 계상한다. 이후 할부금이 입금되면 외상매출금의 회수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인도(판매)시(제품원가 700원)

(차) 할부외상매출금 1,000 (대) 할부매출 1,000

○현금 입금시

(차) 현 금 200 (대) 할부외상매출금 200

이때 할부매출잔액이 손익인식되었으므로 결산기마다 회수기일이 도래되지 않은 부분만큼에 대하여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미실현이익)을 계산하며 수정분개처리한다.

$$\textcircled{\text{C}} \text{ 미실현이익} = (\text{할부매출총액} - \text{할부매출원가}) \times \frac{\text{할부외상매출금잔액}}{\text{할부매출 총액}}$$

○분개처리

(차) 미실현이익공제 240 (대) 미실현이익충당금 240

$$240 = (1,000 - 700) \times \frac{800}{1,000}$$

여기서 미실현 이익공제는 손익을 줄여 주며 총당금은 할부매출채권과 차감 계상된다.

② 판매시에 대조계정을 사용하는 방법

장기할부판매계약에 의거 상품인도시 할부판매 총 금액을 대조계정으로 한 후 할부금의 수취시마다 매출실현으로 하여 매출계상한다.

○ 인도(판매)시

(차) 할부매출계약	1,000	(대) 할부가매출	1,000
		(대조, 비망계정입)	

○ 현금입금시

(차) 현금	200	(대) 할부매출	200
할부가매출	200	할부매출계약	200

연말시점에 재고자산이 모두 판매된 것으로 되나 판매손익은 일부만 반영되어 손익이 왜곡되므로 해당금액만큼의 손익을 조정하고 할부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다.

③ 할부회수기준의 지속 및 승계

할부회수기준은 기업회계상의 보수주의 기준을 세법기준에서도 받아들여 손익을 대금회수약정 시점에 따라 서서히 인식한다는 뜻이다. 합병의 경우 기존 할부회수기준이 그대로 승계되며, 폐업된 경우는 미실현 이익 등도 조정하여 익금 및 손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6) 장기할부판매의 세무조정 사례

【사 례】

○ 대량제한 기계설비 중 한 품목을 다음과 같이 판매하였다.

- 계약일 : 02. 3. 31 ◦ 계약 금액 : 18,000,000원
- 대금결제조건 : 02. 3. 31 계약금 3,000,000원 6개월 경과시마다 3,000,000원씩 5회에 분할결제

- 회사는 기계대금총액을 매출계상하고 제조원가 전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결산함(기계 제조원가 15,000,000).
- 02. 9. 30에 회수되어야 할 부분금이 결제되지 아니함.

【조정계산】

- 연불판매수입금액 및 대응원가계산

⇨ 당해 연도에 회수할 금액

02. 3. 31 : 3,000,000원

02. 9. 30 : 3,000,000원

계 6,000,000원… 할부판매 수입금

⇨ 당해 연도 회수할 금액에 대한 대응원가

$$\text{제조원가}(15,000,000) \times \frac{6,000,000}{18,000,000} = \text{대응원가}(5,000,000)$$

⇨ 조정사항

구 분	결산서상	할부매출실현금액	조 정
수입금액	18,000,000	6,000,000	12,000,000
대응원가	15,000,000	5,000,000	10,000,000

- 수입금액 과다계상액 12,000,000원 익금불산입
- 대응원가 과다계상액 10,000,000원 손금불산입
- 사업용 고정자산을 할부 또는 장기할부양도한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세무조정하여야 하나, 매출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는 기입하지 아니함.

2. 건설·제조·용역 등 제공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69조)

■ 건설 등 용역제공 손익귀속사업연도 요약 ■

건설·제조·용역 등 기간	기간(1년 미만 또는 이상)에 상관없이 통일
작업 진행률 분명	목적물 완료 정도(작업 진행률 기준) : 영 제69조제1항

작업 진행률 불분명	목적물 인도일에 인식(용역은 완료일) : 영 제69조제2항 ※ K-IFRS 적용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예약매출도 인도기준
결산선택	진행기준으로 결산한 경우 진행기준 적용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의 1년미만 건설계약·예약매출의 경우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 선택 허용

관련법령

●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 ③ 삭 제 (2010. 12. 30)

1) 용역업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일반 건설·제조·용역 손익귀속

산업이 발전하고 복잡다기화할수록 상품·제품 및 기타 생산품과 같은 재고 자산 재화나 기타 자산의 양도보다는 무형의 지식·정보·인적 및 물적서비스 등의 용역 제공산업이 그 숫자 등의 양적인 면이나 거래금액의 크기 등의 질적인 면에서 확대되고 그 점유비중도 커져 간다.

앞의 시행령 제68조는 재화·자산 및 물건 등의 판매손익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제조·기타 용역손익은 본 시행령 제69조가 규정하고 있다.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재화제공 경우의 인도일 개념과 달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귀속시기로 한다.

종전에는 용역 제공에 대하여 구분이 곤란하여 용역제공이 완료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용역의 제공도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운송·해상운송용역 등 손익귀속

① 운송용역 완료시점

운수 및 창고업은 물리적 시설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사업체를 한정하기가 곤란한 특수한 용역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도 대분류 I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운송업의 손익귀속시기도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시점으로 함이 원칙이다.

② 해상운송은 항해완료, 진행기준 선택

해상운송은 육상 및 공상운송과 달리 항해에 1달 이상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대하여 세법상으로는 권리확정 개념에 충실하면서 인도기준과 견주어 운송계약내용이나 운송의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 운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함이 타당하다.

여기서 용역제공완료일이란 화주에게 실제로 물건 등을 인도한 날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별도의 명문규정은 없지만 항해완료기준과 항해진행기준 중에서 선택하여 계속 적용하면 무난하다.

(3) 신탁용역 손익귀속시기 등**① 신탁업 용역소득 및 위탁자 보수 등**

신탁업법상의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의 대가로 보수를 받거나 신탁재산운용보수를 받는데 위탁판매와는 구분되어 상호간에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보수금의 손익을 인식한다.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산의 종료일 및 계약의 해지일이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용역제공완료일이 된다.

(4) 일부건설·제조·기타용역 손익귀속시기**① 목적물의 완료 정도(진행률)에 인식**

건설·제조·기타용역·도급공사·예약매출 등 모든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에는 건설이나 용역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장기인 경우는 작업진행률을 적용한다. 반면에 건설·용역 등의 계약기간은 1년 미만인데 대금지급방법은 1년 이상 장기이거나 장기할부인 경우도 이는 목적물의 인도일, 용역제공의 완료일에 손익인식한다.

왜냐하면 재화 등 자산판매인 경우만 1년 이상 대금의 할부금 회수기준에 따라 회수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였으나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개정 규정으로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도록 통일하였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진행기준이나 인도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2) 작업률을 계산할 수 없거나 K-IFRS를 적용하는 도관으로서 지급배당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1) 인도일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① 작업진행률 계산 불가능시 인도기준 인식

본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는 작업진행률, 즉 목적물의 건설 완료정도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장부증빙이 불분명하면 목적물 인도일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K-IFRS를 적용하는 도관으로서 지급배당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은 인도기준 인식

법 제51조의2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중 K-IFRS 도입기업의 예약매출의 경우 인도일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④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11. 2. 28 개정)

(2)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 등 제공시 작업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선택적용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

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중소기업의 1년미만 건설계약·예약매출의 경우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 선택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3) 작업진행기준 완성기준의 손익인식계산

① 공사완성기준과 적용상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도급이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면서 완벽이행을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완성되지 않으면 아무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논리에 따라 공사도급에 대하여는 일이 완성되어 봐야 수익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며, 따라서 공사완성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다는 뜻이 성립한다.

그러나 공사기간이 긴 경우 법인이 기간중에 수행한 경영성과를 알 수도 없고 기간손익도 불균형이 초래되어 이해관계자의 혼란이 극심할 것이다. 특히 대형공사를 위주로 하는 법인인 경우 공사대금을 선수금으로 받을 때 자금사정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이나 이익은 한동안 없는 것으로 공시될 수 있으므로 진행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② 작업진행기준 적용방법론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공사완성기준만에 의한다면 여러 회계기간에 걸치는 장기공사에 있어서 공사가 완성되어 인도시까지 수익이나 손실을 계상하지 않다가 공사가 완성된 때 일시에 거액의 수익이나 손실이 계상되어 기간손익이 왜곡된다. 이러한 회계상·과세소득 계산상의 불합리 때문에 용역매출액, 예약매출액은 공사기간의 장기·단기에 관계없이 공사 또는 제조의 진행 정도에 따라 손익을 계상하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이 규정하고 있다.

③ 작업진행기준

익금수입금액은 총 계약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작업진행기준에 의한 수입금액계산은 다음의 각 계산 요소에 의한다.

◎ $\text{작업진행정도에 의한 공사수익} = \text{계약금액} \times \text{작업진행률(가)}$

◎ $\text{작업진행률(가)} = \frac{\text{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 공사비 누적액}}{\text{총공사예정비(나)}}$

여기서 (나)총공사예정비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하는데 공사추정 계산서상의 공사재료비·공사노무비 및 기타 공사경비의 합계액이며 변동상황을 반영한 공사원가 합계액이다. 일반관리비나 판매비 등의 간접비는 포함하지 아니함이 일반적이다.

관련 시행규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011. 2. 28 개정)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 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text{작업진행률} = \frac{\text{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text{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2007. 3. 30 신설)

④ $\text{계약금액} \times \text{작업진행률로 수입익금 인식}$

작업진행기준의 적용을 위해서는 작업진행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의 세법상 표현으로는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고 한다. 건설·제조를 완료한 정도란 작업진행률을 뜻하는데 작업진행률이란 총공사예정비(원가) 중 실제 발생된 총공사비 누적액을 말한다.

공사진행기준 적용시의 법인의 익금 및 손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 각 사업연도 익금 = 도급(견적)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익금산입금액
- ◎ 각 사업연도 손금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관련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2011. 2. 28 개정)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⑤ 확정계약금액 및 추가계약금액 포함

익금금액은 일단 계약금액 및 견적금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서 계약금액이란 도급인과 수급인 쌍방간에 확정된 계약조건에 따라 도급공사의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총 공사예정비는 계약시 공사원가에 당해 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추정 공사원가를 가산한다. 따라서 같은 논리로 도급계약 공사금액이 당 연도중 변경되면 변경된 금액도 가감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기존의 익금 반영금액이 수정되지 않는다.

⑥ 도급계약의 해약시 차액반영

계약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이 익금에 산입되는데 도급계약이 해약되면 당초 익금가산액과 해약으로서 확정된 총금액과의 차액을 해약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⑦ 작업진행률 계산을 위한 건설업회계처리준칙 내용

장기건설계약 등의 익금액 ·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은 작업진행률인

데, 작업진행률이란 말 그대로 공사 혹은 작업이 진행 및 진척된 정도라고 정의한다. 기업회계상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5조는 공사진행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실제 공사비가 공사에정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공사에정원가는 합리적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공사수익실현이 작업시간, 일수, 면적, 물량에 관계있고 객관적 계산이 가능하다면 이 비율대로 공사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여러 기준 중 합리적 추정공사원가비율만을 택하도록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실16.28 (기성고증명과 진행률계산) 문단 16.47에 의하면 공사진행률은 총공사에정원가에 대한 실제공사비 발생액의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수익의 실현이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등과 보다 밀접한 비례관계에 있고, 전체 공사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단 16.47에서 규정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의 결정과 관련하여,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고증명은 동 기성고증명이 공사의 실제 기성부분과 부합하고, 그 기성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이 청구되어 그 대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등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인정할 수 있다. (문단 16.47)

⑧ 총 공사예정비 및 추정공사원가

총 공사예정비는 당해 공사의 완공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총 공사비인데 세법은 도급계약당시 추정공사원가에 변동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공사원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총 공사예정비 = 계약당시 추정공사원가 + 변동상황 반영 추가 추정원가

⑨ 총 공사비 누적액 및 자재

총 공사비는 말 그대로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제반 공사비로서, 재료비·노무비·기타 공사경비 등이 포함된다.

⑩ 자기부담 안한 자재비는 불포함

작업진행률 계산시 자기가 부담하지 않은 자재비는 총 공사비 누적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⑪ 하도급인 경우의 작업진행률

공사도급시 원수급자가 공사를 수주하여 전부 혹은 일부에 해당하는 공사를 다른 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있다.

공사의 하도급시 하도급자에 대한 지급금액을 외주가공 공사비로 하여 총 공사비 누적액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한다.

⑫ 작업진행률이 불분명한 경우

건설 등 계약당시의 합리적 추정공사원가와 변동원가가 계산되며, 특정 사업연도말까지 실제 계산집계된 총공사비 누적액이 있으면 작업진행률은 당연히 계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불비하거나 신뢰성이 없다면 공사소요기간 등 기타의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69조제2항은 작업진행률의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면 다른 대체방법(시간, 일수)으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인도일에 손익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증빙불비시 완성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4) 각 건설계약유형과 손익인식방법

① 작업진행기준적용 추가계산액의 익금과 발생비용의 손금계산

작업진행률 계산에 따른 건설·용역 등의 익금과 손금에 있어서 당연도 공사금액이나 공사원가에 추가 발생금액이 있다면 추가계산금액을 익금으로 하고, 발생공사비용을 손금으로 계산하여 인식한다. 즉, 매년단위로 변동요인을 기존 계산산식에 분모·분자에 반영하여 계산한다.

② 개산도급계약 : 정산차액 확정시의 귀속

건설 등 계약시 도급금액을 알 수 없거나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적정한 금액을 잠정적으로 결정한다. 이를 개산도급액이라 하는데 개산

도급의 경우에 있어서의 공사진행기준 적용을 위해서는 도급금액은 일단 약정된 개산도급금액으로 조건이나 상황이 확정되었을 때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정산차액은 추가적인 도급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③ 원가보상계약

앞에서 설명한 개산도급은 어쨌든 도급으로서 당초에 목표가액에 근접하는 개산금액이 계약으로 약정되는 금액이므로 작업진행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도급금액을 사전에 계약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비용에 상당한 이윤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계약할 수 있다. 발생한 비용이나 공사원가에 일정액이나 일정비율의 이익을 가산하는 원가보상계약은 계약상의 공사진행에 따른 비용이나 원가에 의거 수익이 명확히 확정된다. 이는 수익의 실현주의 개념에 있어서도 별 문제가 없으므로 기업회계상으로는 작업진행기준 및 생산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법인세법은 사전에 도급계약금액을 정하고 이의 달성여부에 따른 것만 공사진행으로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가보상계약은 수익의 권리화정액이 발생한 원가로 인해 명확하므로 당해 사업연도 기간동안의 원가에 대한 이익을 익금으로 인식하면 된다.

④ 장기도급공사의 인계시 : 연대보증인의 공사계속

도급계약시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해 수급인을 위한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다. 도급계약의 공사기간 중 수급인이 도산하거나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면 연대보증의무자가 잔여공사를 한다. 이 경우 연대보증의무자는 당해 잔여공사 및 하자보수공사가 본 항에서 정하는 장기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역시 작업진행기준에 의거 손익을 인식한다.

⑤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공사 계속

피합병법인의 장기도급계약은 합병법인이 당연히 승계한다. 즉, 합병의 경우는 도급계약이 인계되거나 이전된 것이 아니라 세무상으로는 도급계약상의 수

급자의 상호만 바뀐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합병법인의 손익계산입장에서 보아 잔여기간의 장·단기에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이 적용하여 오던 작업진행기준을 계속 인계받아 적용하여 손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5) 세무조정사례

【사 례】

① 결산서상 수입금액 내역

㉠ 제품매출 : 800,000,000원

㉡ 공사매출 : 675,000,000원

② 공사현장별 공사현황

공사명	공사계약 체결일	도급계약기간	도급금액	당해연도총공사비 (총공사예정비)	손익계산서상 수익계상반영액
A	2010. 11. 10	2011. 2. 1~2012. 5. 17	700,000,000	460,000,000 (600,000,000)	470,000,000
B	2011. 7. 20	2011. 8. 10~2012. 9. 30	400,000,000	160,000,000 (300,000,000)	205,000,000
계	-	-	1,100,000,000	620,000,000	675,000,000

③ 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계를 다음과 같이 매각하였음.

○ 계약일 및 인도일 : 2011. 3. 31

○ 계약금액 : 18,000,000원

○ 대금결제조건 : 2011. 3. 31 계약금 3,000,000원을 받고, 6개월 경과시마다 3,000,000원씩 5회에 나누어 받기로 함.

○ 회사는 기계대금총액 및 장부가액(15,000,000원)전액을 당기의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로 각각 계상하여 결산하였으며

○ 2011. 9. 30에 회수하여야 할 부분금 3,000,000원이 아직 결제되지 아니하였음.

④ 제품재고액 중 Y제품 8,000,000원은 타인에게 위탁판매하기 위한 위탁품(적송품)으로서 2011. 12. 31에 수탁자가 10,000,000원에 판매한 것임.

⑤ 2010년도 거래실적이 우수한 대리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2011년 1/4분기 중에 매출에누리 하여준 금액 5,000,000원을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함.

【세무조정 계산】

① 공사수익의 계산

공사명	①도급금액	②당해사업연도말 총공사비누적액	③총공사 예정비	④진행률 (②/③)	익금산입액⑤ (①×④)	⑥회사수익 계상액	⑦조정액 (⑤-⑥)
A	700,000,000	460,000,000	600,000,000	76.6%	536,200,000	470,000,000	66,200,000
B	400,000,000	160,000,000	300,000,000	53.3%	213,200,000	205,000,000	8,200,000
계	1,100,000,000	620,000,000	900,000,000		749,400,000	675,000,000	74,400,000

－공사수익 세무조정

세무상 공사수익 : 749,400,000

장부상 공사수익 : 675,000,000

익 금 산 입 : 74,400,000(유보)

② 장기할부매각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 계산

○ 법인이 인도기준으로 결산조정 신고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아니함.

③ 위탁판매 수입금액 조정계산

－위탁판매액 10,000,000원은 익금산입, 원가 8,000,000원은 손금산입

④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는 매출에누리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므로 동 에누리금액을 2011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

조정내용 정리

－수입금액에 가산할 내용

㉞ 공사매출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조정액 : 74,400,000원

㉞ 제품매출

• 위탁판매 수입계상 누락액 : 10,000,000원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사항

㉞ 제품매출

• 매출에누리 금액(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님) : 5,000,000원

* 조정내용 정리사항으로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작성이 끝나면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2011. 2. 28 개정)

사업연도	2007. 1. 1 ~ 2007. 12. 3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인명	(주) 안 건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수입금액 조정계산

계정과목		③결산서상 수입금액	조정		⑥조정 후 수입금액 (③ + ④ - ⑤)	비고
①항목	②과목		④가산	⑤차감		
매출	제품매출	800,000,000	10,000,000	5,000,000	805,000,000	
	공사매출	675,000,000	74,400,000		749,400,000	
계		1,475,000,000	84,400,000	5,000,000	1,554,400,000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공사명	⑧도급자	⑨도급금액	작업진행률계산			⑬누적임금 산입액 (⑨×⑫)	⑭전기말 누적수입 계상액	⑮당기 회사수입 계상액	⑯조정액 (⑬-⑭-⑮)
			⑩해당사업 연도말 총공사비 누적액 (작업시간 등)	⑪총공사 예정비 (작업시 간 등)	⑫진행률 (⑩/⑪)				
A	갑	700,000,000	460,000,000	600,000,000	76.6%	536,200,000	0	470,000,000	66,200,000
B	을	400,000,000	160,000,000	300,000,000	53.3%	213,200,000	0	205,000,000	8,200,000
계		1,100,000,000	620,000,000	900,000,000		749,400,000		675,000,000	74,400,000

나.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계정과목		⑩세법상 당기 수입금액	⑳당기 회사수 입금액 계상액	㉑조정액 (⑩-⑳)	㉒근거법령
㉓항목	㉔과목				
계					

다. 기타 수입금액

㉕구분	㉖근거법령	㉗수입금액	㉘대응원가	비고
위탁판매		10,000,000	8,000,000	
계		10,000,000	8,000,000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3. 금융이자수입 등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은 주요 사업항목은 아니지만 대손이나 못받을 위험은 적은 특별항목, 비영업항목이므로 수익비용인식시점에 대해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손익은 일반적으로 발생주의를 적용하며 익금분야는 실현주의, 손금분야는 발생주의를 적용하는데, 금융이자·배당수입 등은 권리확정주의 혹은 현금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수입이자 : 일반법인은 권리확보 기준일(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 : 권리확정·이체·상환·출금일 등), 금융·보험영위법인은 실제 입금일(현금주의 적용, 단 현금입금되어도 선수입이자는 제외), 일반법인의 경우 예금 등 기간경과분에 대응하는 이자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시 계상액을 익금으로 반영함(즉, 이자수입의 기간분 결산반영한 발생주의 금액은 그대로 인정).
- ◎ 지급이자 : 일반법인 및 금융·보험영위법인 모두 의무기준일에 손금인식(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 기준하여 계산). 단, 결산확정시 기간경과 대응이자의 발생주의 미지급 계상액은 손금인정
- ◎ 법인의 배당수입 : 권리확보기준일(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수입시기 : 처분결의일, 확정일 등). 단, 금융회사 등이 신용불량자 관련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
- ◎ 금융·보험영위법인의 보험료·부금·보증료·수수료 등 : 실제 현금수입일 기준(선수입보험료 및 결산시 부채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제외), 단 결산확정시 기간경과 보험료의 발생주의 수익인식(결산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포함)시 익금산입(즉, 회사의 발생주의 회계처리 적용시 그대로 인정하고 현금주의 회계처리 적용해도 그대로 인정함)
-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정형화된 방법의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투자회사가 결산 확정시 기간경과 대응 유가증권 등의 이자·배당소득을 수익계상하면 익금산입함.
- ◎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 수입 또는 지급시기의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관련법령

●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종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④ 투자회사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영하는 신탁재산(같은 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111조 및 제113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법 제73조제

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6항에 따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일반법인의 이자수입 익금산입시기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① 이자수입 권리확정일에 익금산입

수입이자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수입권리확정일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다. 즉, 지급받은 날, 상환일, 해약일, 연장일, 인출일, 환매일 등인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2010. 2. 18 개정)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003. 12. 30 개정)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2003. 12. 30 개정)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95. 12. 30 개정)
 -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98. 12. 31 개정)
 -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2001. 12. 31 신설)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삭 제 (2007. 2. 28)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95. 12. 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2010. 2. 18 개정)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② 결산회계에서 발생주의로 기간이자계상시 익금산입

일반법인의 금융이자수입은 수입권리확정일이 원칙이지만, 법인에 따라서는 결산회계에서 각 금융상품의 경과기간부분에 대해 이자수입을 발생주의로 수입계상하거나 결산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회계처리하는 (차) 미수수익 ××× (대) 수입이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이 일부러 수입이자를 발생주의로 조기 인식한 금액에 대해 세무상 그대로 확정한다. 즉, 미수수익개념을 수입이자로 수익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역지로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세무조정이 임의선택사항은 아니고 회사의 결산회계정책대로 그대로 확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본 법 제73조 규정상 원천징수되는 이자수입은 원천징수되는 사업연도 시점과 이자수입의 익금산입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발생주의로 미리 수입인식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수입의 경우는 이자수입의 수익·익금산입과 원천징수시점을 일치시키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미수수익	78,000	(대) 수입이자	100,000
(혹은 현금)			
(차) 선납법인세	22,000		

2) 은행·금융·보험업 연금수입업종 영업수익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1) 금융업 수입의 연금주의

① 금융기관의 현금주의 적용

익금확정시기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 일반원칙인데 그 밖의 대부분의 거래도 객관적으로 보아 권리의무확정주의 개념에 의거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행·보험업자 등이 받는 이자·보험료·부금 및 보증료와 수수료 등의 수익은 당해 금액을 실제로 수입한 때로 하는 기준, 즉 현금주의에 의하여 계상함이 현실에 맞는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발생주의에 의거 각 금융대여금의 기간별 미수이자·미수보험료 및 미수부금 등과 같이 미수수익을 기업회계상 계상반영하였다면 그대로 익금산입한다. 즉, 미수수익 등 결산반영내용을 일부러 익금불산입 세무조정하지 않으며, 익금불산입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 등이 선수금 및 선수수입 등의 선수수입이자·선수입보험료(결산시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 포함)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이 먼저 들어온 것이라도 아직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수입이므로 당기의 수익에는 산입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한다. 즉, 선수입이자를 기업회계상 이익반영했다더라도 익금불산입해야 한다.

② 보수주의 회계관행준중

이렇게 금융회사 등의 영업수익에 현금주의기준을 특별히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보험의 영업거래는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므로 손익에 영향이 별로 없고 금융회사의 고객관리 차원에서도 편리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금융회사 등은 별도의 회계처리지침 등에 의거 보수주의 개념하에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회계의 일반 관행도 존중한 것이다.

③ 금융회사 이외 기타 법인이자수익의 발생주의·확정주의 적용

금융회사 이외 법인이 이자수입을 받는 경우는 현금기준이 아니고 확정주의

로 한다. 즉, 지급받은 날·지급개시일·상환일·이자지급일·해약일·인출일·환매일 등인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다.

④ 금융회사 금융이자수익의 현금기준방법

금융회사 등은 금융회사 고유의 영업수익 분야에 대해서 당해 수입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실제 수입으로 수취된 것에 한해 수익으로 인식한다.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확정되려면 i) 당해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어 있을 것, ii) 당해 금융회사이 실제로 현금 및 현금등가물 등으로 수취한 것일 것의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것에 한하여 수익이 된다. 여기서 i)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ii) 요건은 충족되지 않은 것이 미수수익이며, ii)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선수수익·선수수입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미수수익을 금융회사 법인이 회계결산에 수입반영하였다면 이는 적극적으로 세법상 익금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므로 이는 익금으로 한다. 반면에 선수수익은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익금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2) 현금수입기준의 예외

① 미수영업수익의 권리확정주의 인정

미수이자 등을 권리의무확정주의개념에 의거 수입으로 확정된 날의 익금으로 결산계상한 경우는 익금으로 산입하는데 이는 현금주의의 예외로서 발생주의를 인정한 개념이다. 일부러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여서는 안된다. 실무적으로는 국·공채, 정부채권, 통안증권 및 기타의 조건상 채권보전이 명확한 경우에 미수수익을 조정한다. 미수이자라 하더라도 수입이 확실히 보장되는 이자는 수익으로 계상하여도 문제없고 금융기관이 실무적으로 처리하던 회계관행을 존중한 것이다.

이러한 관행과 본 단서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법인이 위와 같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계속 적용한다면 이 범위내에서 수익계상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② 금융이자수입의 기업회계와 세무처리 통일화

즉, 금융수입에 대해 금융기관이 발생주의로 수입이자 등 보정하여 회계반영하였다면 그대로 세무상 확정되며 보정하지 않은 경우도 그대로 확정한다. 세무와 기업회계를 처리결과대로 일치시킨 것이다.

리스회사, 리스이용자의 리스료리스거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리스회사 : 운용리스료 : 리스기간에 걸쳐 안분수익인식

(수익) 금융리스료 : 금융리스채권×유효이자율을 수익인식

◎ 리스이용자 : 운용리스비용 :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비용인식

(비용) 금융리스비용 : 금융리스 부채액×유효이자율 곱한 금액을 금융비용인식

관련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35조 [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7. 3. 30 개정)

③ 선수입이자·보험료 등 선수 영업수익의 제외

현금주의에 의거 수취된 수입액을 무조건 익금으로 하지는 않고 아직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선수입이자·선수보험료(결산시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 포함) 등 선수수익은 비록 현금주의를 강제하더라도 익금사항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 법인은 선수수익을 기업회계상 적극적으로 부채로 계상함이 일반적이며, 재무회계상 임의로·실수로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도 세무조정예 의거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④ 배당수입 등의 권리확정주의 (제2항)

현금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법에서 특별히 열거한 이자·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만에 한다. 이밖에 현금주의가 적용되는 이자의 범위에는 연체

이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열거한 것이 아닌 배당이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및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본 조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른다. 이들은 현금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신용불량자 관련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소득은 실제로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⑤ 수익 인식기준의 변경과 세무상 문제점

금융기관이 기존에 적용하던 현금주의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로 변경하더라도 이것은 법인의 임의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법인이 계상한 금액 자체를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한다. 반대로 권리확정개념에서 현금주의로 복귀한 세무 조정도 문제 없다.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 등에 대한 수익의 인식기준은 수시로 변경하더라도 세무상 특별한 부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익금의 확정원칙 중 가장 확실한 현금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보다 익금을 과대로 계상하는 방법에 대해 세무상 제재는 없기 때문이다.

(3) 금융회사 등의 범위

현금주의를 적용하는 금융회사 등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음 열거법인은 금융보험업이 지급받는 이자로서 원천징수되는 것만을 말한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010. 2. 18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2009. 2. 4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3. 12. 30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009. 2. 4 개정)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2009. 2. 4 개정)

- | | |
|---|-----------------|
|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2009. 2. 4 개정) |
|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 (2009. 2. 4 개정) |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 (2009. 2. 4 개정) |
| 11.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 | (2009. 2. 4 개정) |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 (2009. 2. 4 개정) |
|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2009. 2. 4 개정) |
|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 (2009. 2. 4 개정) |
|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 되는 것에 한정한다) | (2009. 2. 4 개정) |
|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 (2009. 6. 8 신설) |
|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 (2009. 6. 8 개정) |

3) 기타 재무자원관련 손익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1)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① 지급이자는 권리확정기준에 대응하여 비용 계산

법인의 자금차입, 자금조달관련 지급이자도 이자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객관적 권리확정시점, 즉 지급받은 날, 이자지급개시일, 약정상환일, 실제 받은 날, 특약상 원본전입일, 해약일, 연장일, 인출일, 해지일 등)가 속하는 날에 지급이자로 반영한다. 소득세법상 이자수입시기에 이자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바, 금융이자는 수입측면이건 지급측면이건 모두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와 수입이자의 익금산입,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시기를 가능한 통일하고 있다.

② 결산상 기간대응이자의 손금산입 결산 반영대론 인정

회계결산에서 차입금 등의 지급이자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시기(이자수입시기)가 되지 않았어도 기간경과 대응이자를 재무회계상 지급이자로 반영하였다면 이는 법인이 적극적으로 손금계상한 것이므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여서는 안되며 회사의 기간경과 지급이자를 비용반영한 회계대로 세무상 손금확정한다.

③ 징발보상증권 등의 상환비율별 손익인식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징발보상증권을 받는데 상환받을 금액과 매도자산원가는 해당 상환비율대로 손익에 산입한다고 다음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35조 【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③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는 경우 그 손익은 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본다.

(2005. 2. 28 개정)

(2) 자금대여와 수입이자

① 기업회계상의 기간경과계상

경제주체간의 자금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여야 함이 일반적이다. 단, 금융회사 등의 수입이자, 수입보험료 등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한다.

그러나 일반 거래인 경우라면 예금·유가증권·대출금 및 비영업대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기간경과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익창출 개념인데 당해 자금운용상의 만기일 또는 지급기일 및 약정일에 불구하고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주의로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기업회계상의 일반 관행이다.

② 세무회계상의 권리확정개념과 금융수입 인식 관련성

일반적인 권리확정주의에 의한 익금귀속시기에서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약정이자지급일·원본전입일·해약일·만기일·상환일·만료일 등이 권리귀속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귀

속시기는 발생주의 개념에 의한 계상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현금주의에 의한 실제 수취일도 아니다.

즉, 자금대여로 인한 이익에 대한 권리가 상호간에 확정되었다고 사회통념 및 금융관행상 인정되는 시점들이다. 이는 금융의 계약조건, 지급조건, 해약조건 등의 여러 개념에 의거 명시될 수 있다.

③ 지급이자와 수입이자의 손익인식시기 통일화

손금은 확정된 날에 인식하는데 자금차입에 대한 이자는 대금수수방법에 관계없이 계상된 차입금 전체에 대해 약정이자율로 무조건 계상하여야 한다. 즉, 지급이자의 비용계상과 수입이자의 수익인식은 기업회계상의 보수주의 개념을 반영하여 세무상도 수입이자를 보다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의 법인세법상의 규정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는 수익·비용의 대응표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는 서로간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대응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거래 성격상 동일한 금융거래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권리의무확정이나 발생주의 등과 같이 동일 기준에 의함이 타당하다.

기업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재테크에 의해 수입이자와 지급이자가 같은 수준에 이를 경우에도 지급이자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수입이자는 권리확정주의를 적용한다면 기간손익에 불균형이 발생된다. 따라서 99년부터는 수입이자·지급이자 모두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수입시기에 맞추어 익금과 손금을 각각 인식하도록 통일되었다. 그러나 수입이자의 익금확정시기와 지급이자의 손금시기에 대해 기업회계와 같은 개념에 의거 기간의 경과에 따라 미수수익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도록 하여 기업회계나 세무회계를 통일화시켰다. 현실적으로 기업회계는 보수주의 개념에 의거 비용은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로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경우 수익에 대한 세법상의 보수주의인 현금주의가 실무상의 계산도 간편하며 별 논리적 문제가 없다.

④ 수입이자 익금확정시기의 예시

수입이자의 손익귀속시기의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 ◎ 일반 시중은행이 할인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서할인액은 양도예금증서의 만기일 혹은 만기전에 처분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 신종기업어음(일명 C.P)의 할인액은 약정에 따라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 무기명사채할인액의 경우는 사채원금을 상환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어음관리계좌(일명 C.M.A)의 경우는 예금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 부금이자는 만기이전에 계산이 되어도 만기일이나 해약일해야 손익귀속함.
- ◎ 적립식 목적금전신탁의 경우는 신탁종료일이나 중도해약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함.

(3) 자금투자와 배당금 등 (시행령 제70조제2항)

① 적법 처분된 배당금취획정일

배당금은 주주 및 출자자의 임의적 권리로서 배당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질적 이익배당 결의일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법인이 배당지급 결의를 하면 대부분 배당 수취가 되므로 확정일에 수익 인식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규정, 즉 지급일, 처분결의일, 배당결의일, 결정일, 퇴사일 등에 인식한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신용불량자 관련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96. 12. 31 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2010. 2. 18 개정)
과세기간 종료일
- 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2010. 2. 18 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98. 12. 31 개정)
주식의 소각·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98. 12. 31 개정)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98. 12. 31 신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집합투자기구조로부터의 이익 (2010. 2. 18 개정)
집합투자기구조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8. 삭 제 (2010. 12. 30)

② 배당이 아닌 경우

이익의 분배라 하더라도 법인으로 보지 않는 조합사업체로부터 받는 분배이익은 배당금이 아니다. 따라서 다음의 시행규칙은 분배이익금은 배당결의와 관계없이 당해 조합 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35조 【리스크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조합 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임대료 및 연금수입 업종의 손익귀속시기 (시행령 제71조)

- ① 계약상 임대료 지급일, 지급받은 날, 금전등록기 영수증일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한 손익인식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 자산임대료 : • 계약상 명시 → 정해진 지급일(임대료 지급약정일)
• 계약에 명시 안된 경우 → 실제 지급받은 날
• 결산확정에서 기간경과분 임대수익인식 → 기간경과대로 수익 · 비용의 인식금액을 그대로 세무상 확정함(익금불산입 조 정하지 않음).
- ◎ 금전등록기설치 사업업종(도 · 소매, 최종소비자에 공급사업 등) : 물품대금 · 용역대가의 실제 수입연도 귀속
- ◎ 양도 ·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의 배서양도 : 매각으로 보아 손익의 귀속사 업연도 정함.
- ◎ 기타 특별규정 없는 경우 손익귀속 : 익금 · 손금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관련법령

●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료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 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 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 법」 제32조의3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 · 사용하 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 연도로 할 수 있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 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 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
-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보아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2010. 12. 30 신설)
-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1) 자산임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71조제1항)

① 계약상 임대료 계상기준 : 지급약정일

자산의 전부나 일부를 임대한 경우는 계약상의 임대료 지급약정일에 수입금액과 이에 대한 대응비용을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임대료는 대부분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기일을 어기면 가산금이나 연체금의 규정이 있어 대부분 약정일에 지급된다. 따라서 임대료는 '임대료를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진 지급일'에 손익 인식한다.

② 계약조건상의 수입임대료

자산의 임대시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계약에 의거 임대물건과 대금 및 임대기간 등을 정하는데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의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료의 지급수취액이 결정된다.

임대계약에 체결된 지급약정액은 임대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지연납부하면 연체료 등이 추가되므로 임대계약상의 지불약정액 자체를 임대기간 경과에 따라 손익 인식한다. 그러나 계약이 없거나 계약내용에서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는 실제 지급을 받은 날에 손익인식한다.

③ 장기임대차계약 의한 임대료

1년 이상 장기간의 임대료를 1년 초과기간 이상에 걸쳐 수수하면 1년 단위 손익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1년 단위로 이미 경과한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다.

④ 입회금 등의 수익인식

골프장의 입회금도 반환의무가 없다면 입회금을 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쌍방 계약·규약상 탈퇴시 반환약정이 있다면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예수금·예수보증금·선수금 등의 부채로 계상한다.

⑤ 임대자산의 범위 : 물건·유가증권·권리

임대차란 당사자의 일방인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인 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본 항은 자산의 임대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상의 자산임대는 모두 해당된다. 자산에는 고정자산이나 부동산 뿐 아니라 유가증권 등과 기타 권리나 물권 등도 임대목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토지·건물·빌딩·상가 등이 주요 임대자산이다.

임대차의 일종으로서 리스(Lease)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리스]에 따르면 된다.

⑥ 임대료의 개념 : 모든 유형의 임대대가 및 건물개선비

실질적으로 자산의 사용·이용수익에 대한 대가이면 모두 임대료인데 관리비, 전기료나 수도료도 임대료에 포함 징수될 수 있다.

임차인이 자기부담으로 타인 소유 임차물건을 개수하거나 자본적 지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기간동안 건물 중의 수취 임대료로 안분하여 익금인식한다. 통상임대료 총액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개수완료일에 임대인의 소득으로 처분한다.

2) 금전등록기 설치대상업종은 연금수입기준 (시행령 제71조제2항)

① 금전등록기 수입액의 실제 수입일 귀속

세법상 금전등록기 설치대상의무사업자는 일반적인 익금·손금의 권리의무주의에 불구하고 금전등록기의 실제 수입일(현금수입·금전등록기 기록일)에

익금산입한다.

◎ 금전등록기 설치사업자

- ① 부가가치세법상 면제사업자, 소매업자, 사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 공급사업 등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다. (99.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4. 29 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010. 4. 30 개정)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10. 4. 30 개정)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10. 4. 30 개정)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010. 4. 30 개정)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10. 4. 30 개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10. 4. 30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상 금전등록기 설치 사업자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금전등록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 소매업·음식숙박업 등업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2010. 1. 1 개정)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99. 12. 31 개정)

6의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2010. 10. 13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개정)

3)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사채발행 관련비용 (시행령 제71조제3항)

① 회사채발행 직접 필수지출비용

회사채발행과 관련되어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에는 사채모집공고비·금융기관 및 증권회사 수수료·사채권발행비·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해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기업회계기준은 사채발행비의 이연자산개념이 없어서고, 기업회계기준 제28조에서 사채발행 수수료 등 비용은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하여 사채할인발행차금개념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관련법령

◇ 기업회계기준 제28조 【사채발행차금】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하여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따라서 사채발행관련차금에 대해 기업회계상 사채할인발행차금에 계상해 놓은 다음 유효이자율법 등으로 각 연도에 회계상 비용이나 지급이자 등으로 처리하면 법인세법에서 그대로 따르는데 차이가 없고 따라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다.

② 사채발행비의 상환기간까지 유효이자율법 상각

사채발행비는 종전에는 이연자산이었으나 기업회계를 그대로 따르는데, 기업회계상으로는 사채발행관련 비용도 사채할인발행차이금액과 함께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되는 사채할인발행차금계정으로 처리하는데, 따라서 당기에 비용반영된 것은 아니므로 세무조정사항은 없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환입되면서 영업외비용 혹은 영업외수익

으로 반영되는데 이 방법대로 비용·손실로 처리하면, 종전에 이연자산 개념인 사채발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기업회계처리에 따라서 분할하여 손금산입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

◇ **기업회계기준 제28조 【사채발행차금】**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하여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65조 【사채발행차금의 처리】**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동 상각 또는 환입액은 사채이자에 가감한다.

③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비용손금 반영사례**

사채액면가 1억원, 선이자 10% 할인발행, 할인발행금액 9천만원, 사채발행비 5백만원, 현금입금액 8천5백만원, 표면이자율 3%, 시중실효이자율 8%, 상환기간 2년, 유효이자율법상 첫 연도 차금상각 60%, 2차 연도 40%

① 발행시 회계처리

(차) 현금	85,000,000	(대) 회사채	10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5,000,000		

① 15,000,000원 중 10,000,000원은 할인발행액, 5,000,000원은 사채발행수수료 등 제반비용임.

② 세법상 사채발행비의 이연자산계상과, 기업회계상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순

액 포함계상은 당기손금처리하지 않은 같은 뜻이 됨.

② 1년되는 때의 회계처리

(차) 지급이자(사채이자)	3,000,000	(대) 현 금	3,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9,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9,000,000

(사채이자) 사채발행비의 손금산입액은 3,000,000원임(기업회계상 상각비용 반영과 함께 자동 손금산입되었으므로 세무조정불필요).

③ 2년되는 때의 회계처리

(차) 지급이자(사채이자)	3,000,000	(대) 현 금	3,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6,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6,000,000

(사채이자) 사채발행비의 손금산입액은 2,000,000원임(기업회계상 상각비용 반영과 함께 자동 손금산입되므로 세무조정불필요).

④ 2년이 지나면 모든 잡계정 없어지고 회사채만 1억원(액면대로)남음.

4) 자산유동화와 매출채권 및 어음 배서양도의 손익 귀속시기

(시행령 제71조 제4항)

① 유동화자산 등의 양도에 따른 귀속시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매매 및 교환,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등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 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보아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부실채권의 원리금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부실채권 등의 원리금 회수시 원리금을 구분하지 않고 취득가액의 회수로 처리하다가 취득가액을 상회하는 시점부터 수익으로 인식하고, 차주별로 일괄 결정된 취득가액은 적절한 기준(예 : 취득시점의 계좌별 공정가액 비례로 안분)에 따라 구분한다.

관련법령

● 법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보아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2010. 12. 30 신설)

② 유동화자산 등의 매각 또는 차입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 매각거래 : 금융자산의 양도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기타 양도와 관련하여 신규로 취득(부담)하는 자산(부채)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동 처분손익에 가감하여야 한다.
- 차입거래 : 금융자산의 이전이 담보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담보제공자산으로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5) 일반적인 경우 권리·의무약정주의 (시행령 제71조제5항)

① 익금·손금확정일

특별히 본 법, 조특법상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익금·손금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5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1. 2. 28 개정)

(1) 특별거래항목의 손익귀속시기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제반 거래유형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의 시행령 규정에 특별히 언급이 없거나 거래의 속성상 일반항목이 아닌 특별한 항목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해설한다.

①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 수출완료일 · 확정일**

관세는 국경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부담시점의 손금이 된다. 그러나 들어온 수입물품이 재수출되거나 제조·가공조립 후 수출된다면 당해 수입물품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따라서 관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어진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수출될 때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하러던 관세상당금액이 환급되는바, 환급 확인이 되는 수출 완료일이나 수출확정일에 익금으로 된다.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를 위해서는 관세를 납부한 수출용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수출시에 관세환급이 확정되면 수출완료일에, 나중에 확정되면 결정통지일이나 환급일 중 빠른 날에 익금이 된다.

② **수출완료 관세환급금의 익금산입시기**

수출완료한 제품에 대한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다음과 같이 도시한다.

상황 및 조건	손익귀속금액	손익귀속사업연도
수출완료 · 관세확정	환급관세 확정액	수출완료일의 사업연도
수출완료 · 관세미확정	환급관세액 미확정인 경우 환급예상액	수출완료일의 사업연도
	실지환급과 예상액과의 차액	실제 현금 확정된 사업연도

③ **조세결정취소 환급금이자 : 조세환급금이자 확정일**

특별항목으로 정부결정의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조세결정취소 환급금 및 기타의 이자는 확정된 날 및 통지된 날에 손익이 귀속된다.

④ 국고보조금과 보험차익은 통지일 및 확정일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정책목적 및 이의 달성에 대한 대가로 특별히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의 통지일에 귀속되며, 보험차익은 보험금지급확정일에 귀속된다.

⑤ 전기손익수정익 등 특별항목은 오류확정시 귀속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은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전전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 사항을 비교목적으로 작성하는 전기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경우는 모두 영업외손익항목이다. 이러한 항목 중 수익에 가산되는 항목이나 원가 및 비용에서 차감되는 항목을 전기오류수정손익이라 하는데 여기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회계상 착오·오류 등 정당한 처리기준에서 보아 잘못된 것 들이다. 이들이 고의성이 없는 것이면 확정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다. 기업회계상 영업외손익에 반영되므로 자동적으로 손금·익금반영되는 뜻이 된다.

(2) 제반 원가 및 비용양목

① 기간대응되는 손금 및 비용

제40조제1항은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권리의무확정주의 개념에 의한 의무 확정시기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손금은 수익·비용의 대응에 의해 익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면 된다. 또한 특정익금 항목으로서 특정시기에 결정된 금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라면 익금산입시기에 대응하여 손금산입됨이 타당하다.

② 매출할인·매출에누리·장려금 등은 지급 확정일, 실제 지급일에 귀속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의 차감항목으로 인도기준에 의거 수익차감하지만, 기업회계상으로 에누리와 유사한 항목인 매출할인액은 외상매출금을 당초 약속일자보다 일찍 변제함에 따른 조기납부 할인금액으로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이다. 시행령 제68조제4항은 매출할인액을 상대방과의 약정상 지급기일, 실제 지급일(지급약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 속하는 연도에 손익귀속을 규정하고 있다.

③ 추가공사원가 및 미확정 매출원가의 견적금액 반영여부

주요 공사 완료인도 및 제품인도 후에도 추가로 부수공사를 하거나 일부 조건을 성취하는 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완료·인도 등으로 수익은 이미 확정되어 익금계상하고 손금도 발생 확정된 주요 부문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미래 추가원가 및 조건부 원가는 미확정되었으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 개념에 따라 손금산입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제품의 사후책임 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이미 익금이 확정된 수익에 대한 합리적 추가원가는 손금산입되어야 하며 추정원가보다 크게 추가 확정된 금액은 확정시에 손금산입한다.

④ 추가원가 예상액의 손금산입

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금이나 모든 추가원가는 확정되지 않으면 원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기업회계의 존중개념에 의거 특정 활동의 익금이 전액 확정된 경우는 이미 의무의 범위가 확정된 금액까지 예상하여 실제 발생액 뿐 아니라 당해 예상액도 손금으로 추정하여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⑤ 수출실적 수수료지급

매출 및 수출실적을 위한 제반 수수료나 매출액과의 특별한 대응관계가 없는 업무대가는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

⑥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제반비용 및 소모품 비용 : 기업회계상의 계속성 존중

제반 판매관리비는 기업회계기준의 관행에 의거 법인이 처리한 방법대로 기간비용을 손금에 대응시키면 된다.

저장품이나 소모품도 재고자산과 같이 수불에 따라 손금산입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 1년 이내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중요성 및 신뢰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한다면 기간손익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소모품의 매입 시점에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⑦ 인저세

인지세는 인지를 다량 구입하여 비용처리하였더라도 당해 인지를 실제 첩부·소모·사용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⑧ 추가납부 산재보험료 등

추가납부 및 확정보험료와의 차액 등은 당해 추가액 및 차액의 확정일에 손익이 귀속된다.

⑨ 임의장려금 등

법인이 종업원 등에 임의로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이면 이는 법적지급의무금액이 아니므로 실제의 지급일에 손금이 된다. 법적의무금액은 실제 지급일보다는 계산되어지고 의무금액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산입가능하다.

⑩ 제반 소송비용의 판결확정시점 귀속여부

업무상 소송이 발생하면 변호사에 대한 착수금 지급·성공보수·업무위탁보수 및 사례금과 기타의 필수적인 부수 소송비용 등이 지출된다. 착수금 보수와 중도사례금 등은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민사소송법상의 부수 소송비용은 법원판결에 따라 귀속이 결정되므로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건종결시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된다.

이밖에 소송의 내용이 자산취득 상표권 등 고정자산 취득 등에 소요된 금액이라면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3) 영업외비용 항목

① 지급이자

수입이자는 앞의 용역 및 서비스업에서 설명하였듯이 권리가 확정된 만기일·해지일 등을 손익귀속시기로 하였다. 반면에 지급이자는 법인의 입장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예상금액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연체이자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지급기일을 엄수하게 된다. 따라서 지급이자는 수입이자와 달리 지급기일이 되지 아니하여도 발생주의에 의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된 총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한다. 시행령 제70조제1항은 일반법인의 수입이자·지급이자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권리의무일에 계상함을 원칙규정하면서,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를 동일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결산상 발생주의로 수입이자·지급이자의 기간대응반영시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즉, 수입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수익계상시 익금산입대로 인정하고, 지급이자를 미지급비용으로 비용계상시 손금산입대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자비용을 선지급한 경우는 반드시 선급비용으로하여 해당 손금반영액을 줄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금과 보상금 등

재해보상금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보상금 확정일, 손해배상금은 법원판결 확정일(최종일)의 손금으로 한다.

여기서 법원판결 확정일이란 대법원 판결일 혹은 항소·상고포기시나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된 날로 한다. 물론 익금 측면에서도 손해배상이 법원판결로 확정된 때 및 재해보상금의 수취가 확정된 때가 손익귀속시기가 된다.

③ 개발부담금의 토지원가와 부과시 손익처리

개발부담금 등은 일단 토지원가로 손금산입한 후 실제 부과액과 차이 발생시 부과일에 손익처리한다.

④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인 경우는 전기오류수정이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응하여 손금으로 조정계상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즉, 기업회계상 오류·착오·수정분개·회계처리 미반영 사항의 추가 반영 등으로 인한 손실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는데, 확정시에 손금산입한다.

일반적으로는 손익계산서 반영대로 손금처리된다.